

평생교육원규정
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본원은 동명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평생교육원” 이라 한다.) 이라 하고 평생교육원은 본 대학교 내에 둔다. 다만, 교외 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우수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을 포함한 일반인의 자질향상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, 열린교육사회 및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10.23.)

제3조(교직원 등) ①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직원 및 조교를 두며, 필요에 따라서 비정규과정 담당강사(외부강사, 연구원, 학점은행제 책임교수 등)를 둘 수 있다
② 평생교육원에 필요한 비정규과정 담당강사 등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보수는 따로 정한다.

제3조2(용어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점은행제란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 11690호)에 의거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
2. 일반과정이란 재학생, 지역주민, 일반인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문화 및 교양 강좌를 말한다.
3. 직업교육과정이란 직장 재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.
4. 특별교육과정이란 정부정책에 의해 위탁 운영 또는 평생교육원 자체 수시/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강좌 및 정부정책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강좌를 말한다.
5. K-MOOC(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)란 국가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학습하는 비대면 e러닝강좌를 말한다.

[본조 신설 2019.10.23.]

제4조(설치과정)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설치·운영한다.(개정 2019.10.23.)

1.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과정
2. 일반교양과정
3. 직업교육과정
4. 특별교육과정
5. K-MOOC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
6. 기타 평생교육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 등

제5조(지원자격) 학습자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특성

에 따라 학력 및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(선발방법)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학습비) ① 평생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K-MOOC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. (개정 2019.10.23.)

② 학습비의 반환은 관계법령 등을 따른다. (개정 2014.6.13.)

제8조(수료증)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장이 발행하는 수료증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학습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성실한 학습태도와 단정한 품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 (개정 2014.6.13.)

제10조(징계) 학습자로서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제11조(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) ①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4.6.13.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한다. (개정 2014.6.13.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임명직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**개정** 2014.6.13., 2022.5.3., **2023.9.1.**)

1. 위원장 : 평생교육원장

2. 위원

가. 당연직 : 평생교육원장, **부총장**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미래융합대학장

나. 임명직 : 평생교육원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3. 간사 : 업무 담당자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4.6.13.)

[본조 제목 개정 2014.6.13.]

제12조 삭제 <2014.6.13.>

제13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6.2.24.)

1. 신규 과정개설에 관한 사항

2. 학습기간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
3. 강사료 책정에 관한 사항

4. 학습자 장학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[본조 제목 개정 2014.6.13.]

제14조(위원회 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(개정 2014.6.13.)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4.6.13.)

[본조 제목 개정 2014.6.13.]

15조(운영세칙) 그 밖의 평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 제(K-MOOC 포함)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.

[본조 신설 2019.10.23.]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2011년 4월 17일자로 폐지되는 사회교육아카데미 규정 조항 중 평생교육원에 관련 되는 사항은 본 규정에 승계되어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